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이 강 육*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입시기사와 榻前定奪 |
| II. 입시기사와 榻前傳教 | V. 입시기사와 舉行條件 |
| III. 입시기사와 榻前下教 | VI. 맺음말 |

요약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君臣의 말과 글 및 동정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 중 국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은 입시한 注書가 草冊에 기록하였다가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었다. 국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 중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국왕이 지시한 사안인지 또는 신하와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인지에 따라 榻前傳教, 榻前下教, 榻前定奪, 舉行條件 4가지의 문서로 나뉘었다.

榻前傳教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전교를 승지가 그대로 받아 적어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전교이다. 傳教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承旨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이 司諫이나 承傳色을 통해 승정원에 문서로 전달하여 승지가 베껴 적는 전교이고, 또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국왕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작성한 전교이다. 전자를 備忘記라고 하였고, 후자를 榻前傳教라고 하였다.

榻前下教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지시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 은대교전문헌연구소 사료번역자문위원

하교이다. 下敎도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이 承傳色이나 司諫을 통해 승정원에 구두나 문서로 전달하여 승지가 받아적은 하교이고, 또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국왕이 지시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작성한 하교이다. 전자를 口傳下敎라고 하였고, 후자를 榻前下敎라고 하였다.

榻前定奪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신하의 건의에 따라 국왕이 결정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榻前下敎는 국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지만, 榻前定奪은 신하의 건의에 따라 국왕이 수용하여 결정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라도 국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라는 榻前下敎라고 적었고, 국왕이 신하의 건의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면 「~」라는 榻前定奪이라고 적었다.

舉行條件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과 신하가 나눈 대화 내용 중 지방에 알려야 할 사안과 조정 관원이 알아야 할 사안 등을 주서가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친 문서이다. 榻前定奪은 승지가 요점만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지만, 舉行條件은 군신의 대화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注書가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와 舉行條件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안을 논의했던 당사자에게 簡通을 보내 확인한 뒤 작성하였다. 舉行條件은 대체로 朝報에 반포하였지만, 모두 반포한 것은 아니었다.

주제어 : 承政院日記, 榻前傳敎, 榻前下敎, 榻前定奪, 舉行條件, 備忘記, 口傳下敎

I. 머리말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군신의 말과 글 및 동정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국왕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말과 글이 주를 이루고, 군신의 동정에 관한 기록 등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국왕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글은 승정원을 통해 출납한 문서로 날마다 傳敎軸을 만들어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었고, 국왕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말은 군신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입시한 승정원의 注書가 注書草冊에 기록하였다가 자리에서 물러 나와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었다.¹⁾ 『승정원일기』는 군신의 대화와 문서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군신 사이 소통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국왕과 신하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정기적인 행사로, 매일 열도록 한 經筵과 常參, 매월 4차례 열도록 한 朝參, 매월 6차례 열도록 한 次對, 매월 3차례 열도록 한 輪對 등이 그에 해당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비정기적인 행사로, 국왕이 신하를 불러서 대면하는 引見 또는 召見, 신하가 국왕에게 대면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대면하는 請對 등이 그에 해당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행사이건 비정기적인 행사이건 군신이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는 注書와 史官이 입시하여 군신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중 사관이 기록한 것은 時政記로 작성하였다가 후일 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할 자료로 삼았고, 주서가 기록한 것은 『승정원일기』를 편찬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주서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빠짐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의 대화 기록을 통해 당시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정국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논의, 특정 인물에 대한 논평 등 다양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군신의 대화 내용은 주서에 의해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었지만, 그 대화 내용 중에는 문서로 작성해야 할 사안도 있었다. 해당 사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담당 관사에 전달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었고 朝報에도 반포하여 대중에게 공표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되는 군신의 대화 내용 중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로는 『승정원일기』의 대화 기록에 대한 연구와 군신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한 舉行條件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²⁾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군신 사이의 대화 중 생산되는 문서를 4종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는 국왕과 신하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온 뒤 문서로 작

1) 명경일,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81~87쪽.

2) 김병구, 「조선후기 筵席에서의 왕명 시행 체제 연구: 舉行條件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김병구, 「조선후기 舉行條件의 고문서학적 考察」,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이근호, 「조선후기 舉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규장각』 제49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최재복, 「『承政院日記』 對話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로는 榻前傳教, 榻前下教, 榻前定奪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舉行條件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하나는 군신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구두로 논의된 사안이 어떻게 문서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문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4종류의 문서 중에는 군신이 만나는 자리에서 국왕의 일방적인 지시로 작성한 下達文書도 있고 군신 사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도 있다. 그러한 문서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고 어떠한 성격의 문서인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국왕의 명령이 문서로 하달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선시대 국왕문서에 대한 개별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국왕문서 중 가장 기본적인 문서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傳教와 下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II. 입시기사와 榻前傳教

榻前傳教는 御前에서 내린 傳教를 가리켰다. 傳教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史料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 보이기 시작한다. 다만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教라고 부른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³⁾ 고려시대에는 왕을 皇帝라고 칭하였으므로 황제의 말이나 명령도 詔나 制라고 표현하였다.⁴⁾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국왕의 말과 명령을 教라고 표현한 사례가 다수 보이며, 특히 元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고려후기에는 詔나 制를 쓰지 못하고 국왕의 말과 명령을 教라고 표현하였다.⁵⁾

教는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教는 舜임금이 契을 司徒로 삼으면서 ‘공경히 오교를 펼치라.[敬敷五教]’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蔡沈은 五教에 대해 ‘五教는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 다섯 가지의 당연한 이치로 教수를 삼은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⁶⁾ 이처럼 教는 윗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며, 윗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

3)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聖王 1년 8월, “八月, 大赦。 教曰: ‘清海鎮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先朝之巨賊, 其功烈可忘耶!’ 乃拜爲鎮海將軍, 兼賜章服。”; 『三國史記』 「列傳」, “於是, 朝臣、國戚, 謂巴素以新間舊, 疾之。 王有教曰: ‘無貴賤, 苟不從國相者, 族之。’”

4) 『高麗史』 「世家」 太祖 1년 6월 16일(정사), “詔曰: ‘前主當四郡土崩之時, 剷除寇賊, 漸拓封疆。 …’”; 『高麗史節要』 「顯宗元文大王」 22년 8월, “制曰: ‘女眞將軍阿豆間等三百四十戶來投, 勒留嘉鐵二州之地, 然阿豆間本東蕃子項史之族, 宜遣置東蕃。’”

5) 『高麗史』 「世家」 成宗 8년 2월 29일(경진), “教曰: ‘聞朝野士庶之病者, 未能見醫, 亦無藥物, 不得瘳者多矣。 …’”; 『高麗史節要』 「恭愍王」 恭愍王 1년 8월, “教曰: ‘元老大臣、大夫、士輪番入侍, 進講經史法言。 凡權勢所奪田宅、奴婢積年之訟與夫冤滯之獄, 其審治之。 僉議監察, 是予耳目, 時政得失、民間利害, 直言不諱。’”

이면 아랫사람이 그것을 본받는다든 뜻에서 ‘본받대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⁷⁾ 중국에서는 秦나라 이후로 王과 諸侯의 말을 ‘教’라고 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秦始皇이 황제의 명령이나 명령문을 制 또는 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후 漢나라에서도 이를 답습하면서 王과 諸侯의 명령이나 명령문은 教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⁸⁾

조선시대에는 教가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대표하는 말로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국왕의 말뿐만 아니라 문서의 이름에도 教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왕의 下達文書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教書, 教文, 教旨, 教命, 下教, 傳教 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왕이 구두로 내린 명령은 下教라고 하고 서면으로 내린 명령은 傳教라고 하여 구분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료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教曰’이라고 기록한 경우도 무수히 많다. 조선후기에 정조가 작성하기 시작한 『일성록』에도 국왕의 말과 명령을 ‘教曰’과 ‘教以’로 기록하고 있다. 柳本藝가 『일성록』의 편찬지침서로 작성한 『日省錄凡例』에서는 傳教와 備忘記는 ‘教曰’로 기록하고, 狀啓와 草記에 대한 判付는 ‘教以’로 기록한다고 하였다.⁹⁾ 傳教, 備忘記, 判付는 모두 국왕문서이다.

조선전기의 實錄에 보이는 傳教는 대부분 ‘教를 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¹⁰⁾ ‘教’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傳教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傳教의 教가 국왕의 말과 글을 모두 가리킬 경우에는 傳教를 모두 문서라고 할 수가 없겠으나, 傳教가 문서로 작성되면서부터는 국왕이 발급한 문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가 부족하여 전교를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한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국왕이 內官이나 관원 등을 시켜 전교하게 한 기록 및 국왕이 관원 등을 불러서 전교한 기록들이 성종 때부터 드물게 보인다는 점이다. 성종 이전에는 국왕이 내관이나 관원 등을 관사나 개인에게 보내 전교하게 한 기록 및 국왕이 관원을 불러서 전교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¹¹⁾ 이때의 전교는 서술어로 사용되어,

6) 『書經集傳』 「虞書」 〈舜典〉, “帝曰: ‘契!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教, 在寬.’ [註] …五教,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以五者當然之理而爲教令也。”

7) 『說郛』 卷83 「滄浪詩話」 〈詩辯〉, “道其常而作彝憲者, 謂之典; 陳其謀而成嘉猷者, 謂之謨; 順其理而迪之者, 謂之訓; 屬其人而告之者, 謂之誥; 卽師衆而申之者, 謂之誓; 因官使而命之者, 謂之命; 出于上者, 謂之教; 行于下者, 謂之令.”; 『太平御覽』 「文部」 〈教〉, “『尚書』 「舜典」曰: ‘契! 汝作司徒, 敬敷五教, 在寬.’ 『春秋元命苞』曰: ‘天垂文象, 人行其事, 謂之教。 教, 傲也, 言上爲而下傲也.’ 『文心雕龍』曰: ‘教者, 傲也, 言出而民傲也。 故王侯稱教.’ ”

8)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988, 9, 13쪽.

9) 『日省錄凡例』 「立綱總例」, “傳曰及備忘記, 謹書以 ‘教曰.’ 陳賀頌教文王若曰, 謹書以 ‘頌教文曰云云.’ 末端小註, 書藝文提學某製. ○ 狀啓, 草記判付, 謹書以 ‘教以.’ ”

10) 『정종실록』 2년 10월 15일(병오), “傳教曰: ‘琉球, 若以不義而來獻, 則予及世子, 亦皆不受。 彼遠涉而來, 推誠致聘, 今, 卿等卻之, 則彼必謂以何心而不受, 受而厚報, 可也.’ ”; 『태종실록』 9년 윤4월 21일(계해), “卽令宦官傳教于世子.”; 『세종실록』 5년 7월 7일(을유), “上使左代言郭存中傳教曰: ‘宗親若此之事, 得無諱乎? 此人, 吾何以處之?’ ”

11) 『태종실록』 18년 4월 4일(갑신), “上使忠寧大君傳教曰: ‘…’”; 『태종실록』 18년 5월 10일(기미), “仍召季良傳曰: ‘…’”; 『세종실록』 5년 7월 7일(을유), “上命左代言郭存中傳教曰: ‘…’”; 『문종실록』 1년 8월 1일(병인), “召司憲持平文汝良傳教曰: ‘…’”; 『단종실록』 즉위년 7월 12일(계묘), “召左獻納宋仁昌, 傳曰: ‘…’”; 『세조실록』 7년 7월 14일(임

‘敎를 전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敎’ 중에는 글로 작성된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傳敎’를 모두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이때까지는 전교가 ‘구두로 敎를 전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도 보인다.¹²⁾ 성종 6년(1475)에는 성종이 좌승지 柳暎에게 承傳色이 傳敎한 것만 듣고 승전색이 司謁을 시켜 대신 傳敎한 것은 듣지 말게 한 기사도 보인다.¹³⁾ 성종 때에도 승지나 승정원을 시켜서 전교하게 한 기록이 보이기는 하나 이전에 비해 자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교의 용법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⁴⁾

둘째, 전교를 명사로 사용한 사례가 세종 때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세조~성종 사이에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전교를 받들다.[承傳敎/奉傳敎/捧傳敎]’, ‘전교를 내리다.[降傳敎]’처럼 전교가 명사로 사용된 사례가 세종 때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세조 이후에 자주 보인다.¹⁵⁾ ‘전교를 받들다.[承傳敎]’라는 기록의 경우 성종 이전에는 세종 때 2건밖에 보이지 않지만, 『성종실록』에는 163건이나 보여 전체 실록에 나오는 횟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때의 전교도 ‘전달한 敎’로 볼 수도 있겠으나, ‘敎’ 1자가 아닌 ‘傳敎’ 2자가 국왕의 명령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의 전교를 모두 문서로 볼 수는 없더라도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傳敎를 보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사례가 성종 중반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성종 13년(1482)에 申叔舟의 아들 申澮이 인장과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성종이 신하들과 신정에 대한

자), “召司憲持平李永敷, 傳曰: “...”; 『예종실록』 즉위년 12월 17일(계묘), “命釋韓斯文、金舜輔, 并召提調, 令承政(政一院)傳敎曰: “軍器重物, 不可藏諸閭閻, 汝等久散不收, 罪當置法。然姑赦之, 後勿如是。””

12) 『태종실록』 17년 12월 17일(무술), “命囚承傳色崔閔于義禁府。先是, 通事金時遇, 以使臣迎接, 往于義州, 上傳旨曰: ‘使臣舉動言語, 隨即馳聞。’至是十餘日, 無有啓聞者。上聞其故於閔, 閔不明白傳敎, 上怒曰: ‘使臣舉動, 國家大事。汝爲承傳之任, 何不敬慎!’乃命囚之, 三日而釋之, 歸于其家。”; 『세종실록』 6년 8월 14일(병진), “傳旨承政院: ‘自今自外啓達事, 如肅拜小事外, 須面囑承傳色啓達, 毋使司謁傳傳啓達。自內傳敎事, 亦須承傳色親傳, 然後聽受施行。其或承傳色承內敎, 不親自宣傳, 使司謁代宣, 或代言司啓達事, 不即親到聽受入啓, 隨即啓達。’”; 『성종실록』 15년 12월 27일(병자), “上曰: ‘自今以後, 讓寧入來時, 如此封章, 皆勿受。且此封章之詞, 都是陳言, 與前所進無異, 無乃刊板入來乎! 又此封章, 逆卷封之。若并此傳敎, 則諫官必避嫌, 然亦傳敎乎!’ 都承旨安崇善啓曰: ‘雖避嫌, 義當傳敎, 使知其罪。’ 上曰: ‘然則竝此敎之。’”

13) 『성종실록』 6년 8월 14일(경인), “上語左承旨柳暎曰: ‘今觀承傳色, 公事出納, 常使司謁, 故事多稽緩, 亦有錯誤。自今以後, 凡傳敎事, 非承傳色, 則勿聽。’ 暎對曰: ‘事或不緊, 則臣等亦招司謁入啓, 承傳色亦使司謁傳敎, 若緊關大事, 則安敢乃爾!’ 上曰: ‘予敎承傳色, 承傳色又傳司謁, 則安得不到差乎! 後勿如是。’”

14) 『성종실록』 13년 12월 11일(을해), 使政院傳敎云: “...”; 『성종실록』 13년 12월 7일(신미), “命拿致浪尼加大于殿庭, 令承旨傳敎云: “...””

15) 『세종실록』 13년 1월 24일(기축), “兵曹啓: ‘今承傳敎, 各場監牧官, 勿令兼任驛丞, 專務牧馬孳息之事, 曹與政府諸曹同議。’”; 『세종실록』 22년 7월 13일(계축), “臣, 於前日, 備悉上言。今承傳敎, 反覆思之, 『六典』所載嚴密無餘, 不可輕改以失信。”; 『세조실록』 4년 9월 21일(을사), “吏曹啓: ‘曾降傳敎內 『京中諸司官吏推移遷轉及考滿者, 須考所掌諸事, 一無錯誤, 然後遷轉, 且內資、內贍、校書館員特旨去官外毋得遷轉, 以久其任。’”; 『세조실록』 9년 1월 5일(을미), “兵曹啓: ‘曾奉傳敎 『自備皮甲內, 用牛馬皮者一禁。’”; 『예종실록』 1년 1월 25일(경진), “兵曹啓: ‘今奉傳敎, 曾經朝士之屬正兵者, 別立一衛, 稱勳精衛。’”; 『성종실록』 1년 11월 8일(임오), “禮曹啓: ‘頃承傳敎 『近來儒生專事浮文, 不務經學, 其勸勵節目, 商議以啓。』 敬此, 磨鍊條列于後。’”; 『성종실록』 19년 5월 24일(정해), “傳于承政院曰: ‘憲府官吏, 予欲治罪, 但以臺官勿論。其召憲府言之。’ 成俊等啓曰: ‘今承傳敎, 上恩則重矣。但憲府糾劾百司, 今臣等先失事宜, 就職未安。’”

처벌을 논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전교를 보았다.’라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¹⁶⁾ 그 이후 성종대의 기사에도 ‘전교를 보았다.’라는 기사가 보인다.¹⁷⁾ ‘전교를 보았다.’라는 표현은 전교가 문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문서로 작성된 전교를 확인하지 못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성종 중반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전교를 문서로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서 행정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사용한 국왕문서로는 王旨 또는 教旨, 教書, 教命, 冊文 등이 있었고, 臣民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답변 또는 裁決인 批答과 判付가 있었다. 그러다가 세종 25년(1443)에 왕명을 중앙과 지방에 전달하는 문서를 정비하였다. 우선 지방에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內傳消息을 諭書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⁸⁾ 內傳消息은 고려시대의 宣傳消息에서 유래한 것으로 승정원에서 官印을 찍고 승지가 著名하여 발급하던 관부문서였으나, 諭書는 御寶인 諭書之寶를 찍어 발급하던 국왕문서였다.¹⁹⁾ 문종 1년(1451)에는 지방에 왕명을 전달할 때 승정원이 발급하는 有旨도 사용되었다.²⁰⁾ 세종 25년에는 지방의 관사와 관원에게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 이외에도 중앙의 관사와 관원에게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도 정비하였다. 즉 傳教한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은 教旨로 부르고 사소한 사안은 傳旨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²¹⁾ 이 당시의 전교를 문서화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전교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지와

16) 『성종실록』 13년 4월 22일(경신), “傳曰: ‘…今議論不一, 莫適所從。 其召領敦寧以上, 示議得與傳教。 政丞等見之, 必有所啓也。’ 鄭昌孫等啓曰: ‘伏觀傳教「在予之時, 上下無良, 或有奴殺其主, 又有如此之事, 予甚恥焉。」 臣等伏審辭旨, 不勝痛心。 然堯、舜之時, 尚有四凶。 申滸所犯, 何累聖明之治! 已經大赦, 不可失信。 減死逃諸遠島, 功臣削籍, 妻子爲奴, 何如?’” 傳曰: ‘予之所言, 不特此也, 何只言此耶!’ 昌孫等曰: “臣等非不見傳教之辭, 但臣等以爲「此事, 只有死與不死二議而已, 故臣等啓之如此耳。」 且臣等別舉在予之時等語以啓者, 臣等伏審傳教, 而不勝痛心, 故并及之也。 ”

17) 『성종실록』 20년 12월 13일(병신), “柳洵、沈濤議: ‘伏審傳教甚當。 若有司謹於奉行, 則父子失道者少, 而爭端庶乎息矣。’”; 『성종실록』 24년 4월 28일(임술), “凡君前毀譽, 實關人物進退, 故命憲推鞠。 臣等竚俟明斷, 伏觀傳教, 宰相不可刑訊。 ”

18) 『세종실록』 25년 8월 6일(무자), “遂傳旨禮曹曰: ‘國初有親稟王旨、口傳教旨之法, 慮有後日之弊, 今皆革罷, 獨內傳消息一事尚仍高麗之舊者, 以其事不停滯而行之便易也。 然因仍不革, 則必生後日之弊。 自今內傳改稱諭書, 用小寶, 承政院別書一紙曰「敬奉內降諭書幾度。」 書職姓稱臣著名, 同封以降。 外官但見諭書而無承政院書, 則毋得奉行, 但見承政院書而無諭書, 則亦不奉行, 皆具本以啓。 其奉行之事, 皆啓本回答, 若事關機密, 則密封回啓, 諭書竝令封還。 若自己處下賜諭書, 則私自藏之, 具辭以啓。 凡諭書, 只用邊警與機密及期等事, 其餘雜事, 竝下有司施行。 且在外官吏, 凡干啓聞事, 勿用書狀, 皆呈啓本。 ”

19) 김경숙, 「消息의 의미와 文書名」, 『고문서연구』 25집, 한국고문서학회, 2004, 298~301쪽;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9, 4~16쪽.

20) 『문종실록』 1년 9월 29일(갑자), “召司憲持平李孟英, 傳教曰: ‘前日誠寧大君夫人皆骨山往還事, 令憲府推劾, 其處僧人, 無乃或刑問或囚禁乎?’ 孟英啓曰: ‘但婦女上寺與否, 文移其道, 令推問回報, 其刑問囚禁, 則本府時未知。’ 傳教承政院曰: ‘婦女之往, 非也, 其僧徒, 有何罪焉! 但問婦女上寺與否耳, 不必囚禁刑問。 政院, 以此意, 諭其道監司, 何如? 擬議以啓。’ 右副承旨朴仲孫、同副承旨盧叔全曰: ‘上教允當。’ 上曰: ‘將此意, 亦諭憲府。’ 仲孫馳書于江原道監司曰: ‘前者, 司憲府移文所推婦女上寺事干僧徒, 除刑問囚禁推鞠。’ 事, 有旨。 ”

21) 『세종실록』 25년 8월 29일(신해), “傳旨承政院: ‘自今凡傳教之事, 竝稱教旨, 其細瑣之事, 則稱傳旨, 承旨亦稱臣著名, 仍印之, 下攸司, 以爲恒式。 ’”

전지는 왕명을 바탕으로 문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전지는 승지가 着名하여 발급한 관부문서였다. 이처럼 왕명 전달과 관련된 문서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왕명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도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 오면 전교는 국왕의 명령을 서면으로 기록한 대표적인 국왕문서가 되었으며,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사료에 기록된 국왕문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²²⁾ 먼저 정조의 말을 통해 傳敎가 어떤 문서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전교하였다.

“…御前에서 임금의 구두로 불러주어 받아쓰도록 한 말을 입시한 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 및 司諫을 통해 각 承旨房에 전달한 임금의 말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傳敎라고 한다.”²³⁾

①에서 정조는 傳敎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御前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이다.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司諫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두 가지의 전교 모두 국왕의 명령이라는 점과 문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승지가 입시해서 국왕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및 승지가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는지의 차이가 있었다. 그중 전자를 榻前傳敎라 불렀고 후자를 備忘記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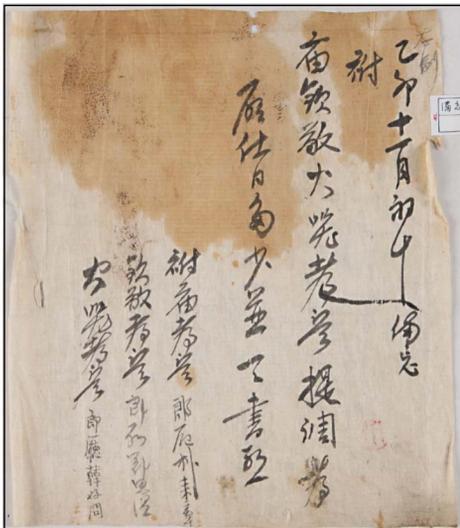
備忘記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이 司諫이나 承傳色을 통해 문서로 전달하여 승지가 받아적어 작성한 전교를 가리켰다. 승지가 비망기를 베긴 뒤에는 사알과 함께 비망기의 원본과 대조하고 원본 비망기는 사알에게 주어 들여보냈으며, 승지가 베긴 비망기로 반포하였다.²⁴⁾ 이근호는 성종대 이래 16세기에 公論

22) 선조 때의 기록에 ‘전교를 베긴다.’라고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승정원에 전교가 문서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실록』 40년 7월 15일(을사), “諫院啓曰: ‘凡傳敎謄書之時、公事成貼之際、該官所當十分詳審、而頃日梁虫介公事、傳敎謄出時、訓鍊都監郎廳、誤書一字、至於下教付標之後、刑曹公事、又襲其誤。莫大王言、任意增減、極爲駭愕。請訓鍊都監謄書郎廳及刑曹色郎廳、并命罷職、刑曹堂上推考。政院居喉舌之地、凡公事出納之際、詳慎審察、俾無差誤、乃其職也。況王言至重、一字增減、事體非輕。而梁虫介公事中、傳敎誤書之字、下教付標之後、刑曹公事、亦不致察、瞭然入啓、極爲非矣。色承旨請命遞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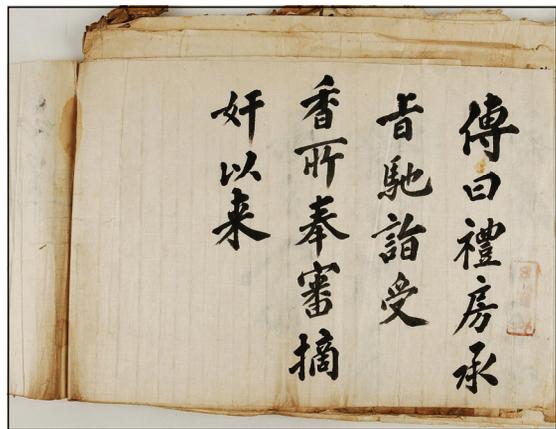
23) 『日省錄』 정조 23년 5월 12일, “敎以: ‘…承旨於榻前以呼寫之口諭承書頒布與或以司諫之傳于各房者各該房以文字書頒、謂之傳敎。’”

24)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2월 16일, “備忘記: ‘此事、每欲提敎而未果。均是絲綸、而承旨入侍傳敎、司諫口傳下敎、承旨書之。至於備忘記、事體較彼無異、況是還入之紙、則謬例之一任吏手謄出者、萬萬乖當。此後備忘記、司諫傳于承旨、則承旨傳書一通、與司諫校準後、原本還入、仍以所謄之本頒布。以此載之故事、定式遵行。’”; 『승정원일기』 정조 5년 9월 11일, “下備忘記于李敬養曰: ‘…諸臣大小除拜、以司諫口傳下敎爲之者、自是前例。而御極以後、凡有除命、臥內、則必以備忘記爲之、筵中、則必以傳旨爲之。此事、載之吏、兵房故事、復或有相左之弊、該房執奏、待發落頒布事、惕念知悉。且以備忘記言之、數十年前一承宣創出謬例、使院吏替謄頒布、備忘記、則自下消瀆矣。向令依舊規、承旨對司諫親書、更與司諫對準、原備忘記、還授司諫入啓。備忘記、則近皆還入、而承旨親書、亦果如式遵行乎! 各房惕念舉行。’”

政治가 활성화되자 臺諫 등 公論을 주도하는 관원에 대해 국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응 수단으로서 중종이 비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²⁵⁾ [사진 1]은 내용으로 볼 때 광해군이 을묘년(1615, 광해군 7)에 내려준 備忘記로 추정된다. 이 비망기에는 오른쪽 아래에 ‘備忘’이라는 2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왼쪽 여백에는 이 비망기의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 승정원에 나아온 관원의 職名과 姓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광해군대의 『승정원일기』가 소실되어 이 내용을 대조해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傳敎軸의 문서들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당시의 傳敎軸에 묶여 있었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진 2]는 정조가 내려준 비망기이다. 이 비망기는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3일에 수록되어 있는데, 입시기사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교축을 베껴 기록한 부분에 ‘傳于李冕膺曰禮房承旨馳詣受香所奉審摘〈扞一奸〉以來’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에 사알이나 승전색이 승정원에 있던 都承旨 李冕膺에게 전달한 비망기라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 남아있는 전교축에 묶여 있는 전교를 통해 이처럼 비망기의 서두도 ‘傳曰’로 적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치부기록류-비망기



[사진 2]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銀臺條例』 「故事」에서는 ‘政令은 傳曰이라 하고, 政令 중에서도 朝報에 반포할 필요가 없는 것은 口傳下敎라 하며, 政令 중에서도 사안이 남다른 것과 敦諭·別諭는 모두 備忘記로 써서 내려준다.’라고 하였다.²⁶⁾ 여기에서의 ‘傳曰’이 곧 榻前傳敎를 가리킨다. 『銀臺條例』에서는 榻前傳敎와 備忘記를 구별하였으나, 『日省錄凡例』에서는 이 둘을 모두 ‘敎曰’로 기록한다고 하였고 정조도 전교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보면 넓은

25) 이근호, 「조선시대 국왕의 備忘記 연구」 『고문서연구』 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7쪽.

26) 『銀臺條例』 「故事」, “政令, 稱傳曰; 政令之不必頒示朝紙者, 稱口傳下敎; 政令之事體自別者及敦諭、別諭, 皆以備忘記書下.”

의미의 전교 안에는 榻前傳敎와 備忘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政令 중에서도 사안이 남다른 것과 敦諭·別諭는 모두 備忘記로 써서 내려준다.’라고 한 것은 비망기가 다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의 역할도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비망기로 써서 내려준 것을 바탕으로 求言敎書 및 敦諭·別諭 등의 諭旨를 작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이 비망기로 내려준 내용으로 求言敎書 및 敦諭·別諭 등의 諭旨를 작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²⁷⁾ 시상 및 정벌과 관련된 국왕의 명령을 각 관사에 전달할 때 작성하는 傳旨도 승정원이 傳敎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²⁸⁾ 이런 점에서 전교 또는 비망기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문서이면서 다른 문서를 작성하는 초본의 역할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주상이 말하였다.

“어제 榻敎를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밖에서 경솔하게 써서 내주었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傳敎와 榻敎는 각각 서로 다른 의미가 있으니, 전교는 승정원에 전달하는 것이고 탑교는 어전에서 왕명을 받아 적은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승지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몰라 입시하여 왕명을 받아 적을 때에는 모두 ‘傳曰’이라 적는 것이 일정한 규례인 줄로 잘못 알고 있으니, 이것도 잘못된 규례이다. 그렇게 보면 탑교는 전교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더욱 밖에서 써서 내줄 것이 아니다. 어제 入侍하라는 傳敎는 그다지 중대한 사안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일의 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 주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불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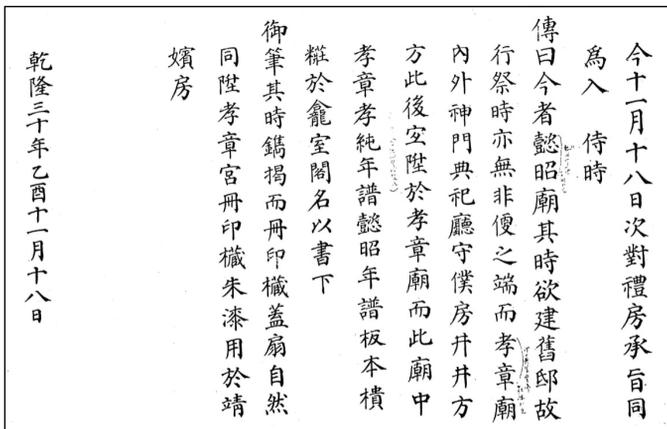
“탑교를 어전에서 써서 내주지 않은 것은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有司堂上으로 불렀는데 戶曹判書라고 잘못 쓴 것은 하나하나 놀라울 따름이다. 해당 승지를 의금부로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주지 않으면 후일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한 글자나 반 획이라도 다시 잘못된 전례를 답습하면 해당 승지에 대해서는 중죄로 다스리라. 이를 『政院故事』에 수록하고 승정원의 벽에도 게시하라.”²⁹⁾

27) 『승정원일기』 효종 3년 10월 19일, “再啓曰: ‘臣等請直以備忘記曉諭中外者, 欲使在廷之臣、草野之士, 感動聖明手敎求言, 實出於至誠惻怛之意也。 況伏觀備忘記中求聞聖德闕失民間疾苦, 一言已盡之, 更何加焉! 今者聖敎, 雖是撝謙之聖德, 詢訪貴乎眞實, 王言不在多語, 更申前請, 直爲曉諭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0월 4일, “本院啓曰: ‘昨者再承聖旨, 令臣等代草求言之敎, 臣等聚首相議, 終無以增飾潤色於其間。 且伏念備忘辭意, 既已詳盡懇惻, 而今若循例代撰, 依樣措辭, 則亦恐非誠實之道也。 反復思惟, 竊有所未安, 敢此再稟。 依前啓, 請以備忘記直爲頒布, 何如?’ 傳曰: ‘卿等之言如此, 依爲之。’”;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2월 30일, “以備忘記, 傳于鄭錫三曰: ‘看御醫之書啓, 卿之所患, 勿藥乃瘳云。 今當庭請方張之日, 不可不入來, 卽爲入城。’事, 承旨敦諭左相。”;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2월 23일, “備忘記: ‘疏批申言勉出之意, 已有日, 尙處荒江之濱者, 不已過乎! 如欲更待節拍而出脚, 則趁未別諭, 愧予鈍思。 聖廟酌獻, 只隔二宵, 此時時任, 有非引入之時, 卿須卽起造朝。’事, 偕來史官傳諭于左議政。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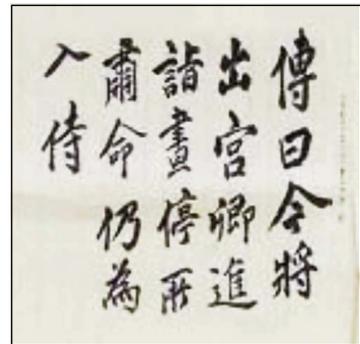
28)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12일, “敎以: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書下堂后, 注書細書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謄草踏印, 承旨具銜下該司, 謂之下音傳旨。 ”

29)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6일, “上曰: ‘昨日榻敎, 不爲稟定, 自外輕先書出者, 是豈成說乎! 傳敎、榻敎, 意義有別, 傳者, 傳于政院也; 榻敎者, 榻前承書之謂也。 近來承宣, 全昧此義, 入侍承書, 皆以傳曰, 認爲一定之例, 此, 亦謬例也。 然則榻敎事體, 比傳敎, 尤非自外書出者也。 昨日入侍傳敎, 雖無甚關係, 而後弊宜念, 不可無飭。 ’ 仍命書傳敎曰: ‘榻敎之不於榻前書出, 事未前聞。 雖曰同是一人, 而以有司堂上召之, 則誤書戶判者, 節節駭然。 當該承旨, 拿問重勘。 此弊, 若不嚴飭, 後弊, 不可勝言。 此後, 雖一字半割, 更或襲謬, 當該承旨繩以重律事, 載之故事, 揭之院壁。 ’ ”

②는 정조가 傳敎와 榻敎를 구별하고 답교를 반드시 입시한 자리에서 쓰도록 한 것이다. 정조가 전교를 ‘승정원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전교 중 榻前傳敎를 가리킨 것이다. 정조가 ‘근래에는 승지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몰라 입시하여 왕명을 받아 적을 때에는 모두 ‘傳曰’이라 적는 것이 일정한 규례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은 답전전교와 답전하교 모두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승지가 적는 것이지만, 답전전교만 서두에 ‘傳曰’이라고 적어야 하고 답전하교는 적지 않아야 하는데 답전하교까지도 서두에 ‘傳曰’이라고 적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정조가 답교를 ‘어전에서 왕명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한 것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작성하는 榻前下敎를 가리킨 것이다. 정조가 말한 ‘入侍하라는 傳敎’란 전날 정조가 비변사의 有司堂上을 입시하라고 한 답전하교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5일 정조가 重熙堂에서 左副承旨 李肇源을 인용한 입시 기사를 보면, ‘주상이 말하였다. 「호조판서를 입시하게 하라.」【답전하교를 작성하여 반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⁰⁾ 정조는 원래 ‘유사당상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명하였는데 유사당상이 호조판서를 가리키기 때문에 승지가 ‘호조판서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기록하였다가 정조의 질책을 받은 것이다. ②에서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불러주었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하는 정조가 승지에게 불러준 답전전교이다. 『승정원일기』의 입시 기사에는 국왕이 승지에게 답전전교를 쓰게 하면 대체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사진 3]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교령류-교서



[사진 4]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국왕문서-批答-未詳
(1책-76920)

[사진 3]은 영조가 내린 답전전교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1월 18일에 영조가 景賢堂에 나아가 書講을 행할 때의 입시 기사에 이 전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서두는 ‘上曰’로 기록되어 있고 말미에 ‘전교를 작성해서 반포하였다.[出傳敎]’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 4]는 정조가 내린 답전전교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2월 6일에 정조가 重熙堂에 나아가 右承旨 李祖承을 인용할 때의 입시 기사에 이 전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서두를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불러주었다.[又命書傳敎曰]’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 4]는 정조가 趙

30)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5일, “上曰: ‘戶曹判書, 入侍.’ 【出榻敎。】”

蹴에게 내린 傳敎 14장과 批答 4장이 粘連되어 있는 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14건의 전교는 모두 서두를 ‘傳曰’로 적었는데, 이를 『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사와 대조해 보면 비망기가 11건이고 答前前敎가 [사진 4]를 포함하여 모두 3건이다. 비망기와 答前前敎 모두 서두에 ‘傳曰’ 2자를 적고 국왕의 말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傳敎는 국왕문서라고 할 수 있다.

전교를 작성하는 일은 승지가 담당하였다.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승지가 입시하지 않아서 사 알이나 승전색을 통해 備忘記로 전달하였을지라도 이를 베껴서 반포하는 일은 승지의 담당이었다. 만약 승지가 筵席에서 전교를 작성하지 못하고 물러 나와서 작성할 경우에는 작성한 전교를 들여보내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반포하였다.³¹⁾ 국왕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引見하겠다는 명을 내리면 승정원이 즉시 전교를 작성하여 대신에게 전달하였다.³²⁾ 전교에서 誤字가 발견된 경우와 狀啓의 말미에 전교만 쓰고 啓字를 찍지 않은 경우에는 승지가 즉시 국왕에게 보고하고 수정하였다.³³⁾

승정원은 매일 내린 전교를 하루 단위로 베껴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③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불러주었다.

“예전에 『승정원일기』를 보니, 故 相臣 金在魯가 아뢴 일로 인하여, 매일 내려준 傳敎와 判付는 申時 이전과 申時 이후로 구분하여 베껴서 들였고, 啓下한 문서도 신시 이전과 신시 이후로 나누어 요약하여 써서 들었으며, 啓下한 舉行條件도 이때부터 써서 들었는데, 이것은 奸計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뒤에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가, 또 重臣 黃景源이 도승지로서 舉行條件을 낸 일로 인하여 옛 규정을 거듭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또 准행하지 않다가 을미년(1775, 영조51)에 내가 代理聽政하고 난 뒤에 특별히 명하여 복구하였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내가 즉위하고 난 이후로는 신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문서를 써서 들이는 것은 방해되는 점이 있다는 승지의 말에 따라 그 다음날 아침에 써서 들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을 삼도록 하여 지금까지 准행하고 있다. 그러나 啓下한 문서를 요약하여 써서 들이는 규정은 정식을 삼을 때에 빠뜨리고 말았다. 마침 말이 나온 김에 생각해 보니, 이 일도 다시 정식을 삼지 않을 수가 없겠다. 내일부터는 ‘傳敎를 써서 들일 때 하루 전에 내린 문서의 度數를 각 承旨房이 요약하고, 廳坐할 때에 각 승지방의 승지가 대조하여 점검한 뒤 전교의 謄本과 함께 入啓한다.’라는 내용으로 『政院故事』에 기재하

31) 『銀臺便攷』「通攷」〈通行事例〉, “己巳三月二十日入侍時, 行都承旨沈象奎奏曰: ‘傳敎或有筵退後書出而直爲頒布者, 事甚未安。從今以後, 自外書頒者, 必爲入啓一經睿覽, 然後始爲頒布, 自是前例, 而恐合事面,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此爲之。’”; 『六典條例』「吏典」〈承政院〉出納, “傳敎自外書頒者, 必爲入稟, 然後頒布。”

32) 전교에는 대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였고, 만약 전교에 대신의 이름을 써서 내려주면 승정원이 보고하였다. 『銀臺便攷』「吏房攷」〈大臣〉, “丙申十一月初三日, 傳曰: ‘傳敎, 亦不書大臣名子, 自下入啓公事之外自內所下文書, 勿書大臣之名, 亦有列聖朝受敎, 則今日正使賜物, 任自書之, 不少畏慎, 雖是小事, 漸不可長。中官金佑章, 削去仕版。’”; 『銀臺便攷』「兵房攷」〈次對〉, “大臣、備堂引見命下, 則書出傳敎, 卽爲傳諭。【事變傳諭。】”; 『銀臺條例』「附錄」〈提稟〉, “傳敎中, 大臣姓名書下, 則稟。【拜相傳敎, 則否。】”

33) 『銀臺便攷』「通攷」〈通行事例〉, “傳敎與判付, 若有誤字, 則承旨隨即提稟事, 下敎。…○ 癸卯七月初七日, ‘此後, 凡於狀啓尾紙傳敎書下時, 若無啓字, 則卽爲微稟踏啓字。’事, 筵中下敎。”; 『銀臺條例』「附錄」〈提稟〉, “傳敎與判付有誤書, 則稟。”; 『六典條例』「吏典」〈承政院〉啓稟, “傳敎與判付, 若有誤字, 則隨即提稟。【狀啓尾紙傳敎書下時, 無啓字, 亦爲微稟。】”

라.” 하였다.³⁴⁾

③은 정조의 탐전전교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국왕이 매일 내린 傳敎와 判付는 물론이고 국왕이 啓下한 신하들의 문서도 매일 베껴서 올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도 중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처음에는 申時 이전에 내린 것은 그날 베껴서 들고 申時 이후에 내린 것은 다음날 아침에 베껴서 들었는데, 몇 차례 폐지와 복구를 반복하다가 정조가 즉위한 뒤부터는 모두 다음날 써서 들이도록 바꾸었다.³⁵⁾ 이러한 제도는 왕명이 착오나 누락 없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전교의 내용은 국왕이 승정원에 지시하는 것도 있었고 각 관사에 지시하는 것도 있었다. 그중 각 관사에 지시하는 내용의 전교일 경우에는 해당 관사의 관원을 승정원으로 불러서 승지가 직접 전해주었다.³⁶⁾ 전교를 들으러 승정원에 나아가는 해당 관사의 郎廳은 밤중일지라도 冠服을 갖추어 입고 승정원에 나아가서 서명하고 직접 전교를 들었다.³⁷⁾ 형조의 경우 낮에는 曹司佐郎이 전교를 들으러 승정원에 나아가고 밤에는 入直하는 낭청이 나아갔으며, 承傳은 각 房의 낭청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³⁸⁾ 軍營의 大將에게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군영의 대장에게 겸임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군영의 대장이나 대장의 從事官을 불러서 전교를 듣게 하였다.³⁹⁾ 승지를 지내지 않은 중2품 이하의 관원이 승정원에 나와서 전교를 들을 때에는 승지에게 拜禮

34) 『승정원일기』 정조 8년 2월 28일, “又命書傳敎曰: ‘曾見院中日記, 因故相金在魯所奏, 每日所下傳敎、判付, 則分申前後瞻入, 啓下文書, 則亦爲分申前後單抄書入, 舉條之啓下, 亦自此時, 蓋出於防奸僞之意也。此規, 其後廢闕, 又因重臣黃景源以知申出舉條, 申復古規。而後, 又不爲遵行, 乙未聽政後, 特命修復矣。至丙申御極後, 因承宣言, 以申前後分書入啓, 不無掣礙之端, 翌朝書入, 永爲定式, 至今遵行, 而至於啓下文書單抄書入之規, 未免漏却矣。適因言端思之, 此事, 不可不更有定式。自明日傳敎書入時, 前一日所下文書度數, 各房單抄, 廳坐時, 各房承旨照檢, 與傳敎瞻本, 同爲入啓事, 載之院中故事。’”

35)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3월 13일, “浩修曰: ‘凡入侍傳敎及承傳色司謁口傳下敎·備忘記·朝臣呈告啓下者, 一竝逐日正書入啓, 以杜中間差錯之弊事, 旣已筵中定奪。書寫二人, 自今差出, 令該曹依本院書吏例付料布, 使之專管此役, 向來加出書吏三人、使令三名, 則減下, 何如?’ 上曰: ‘依爲之。’”

36) 『승정원일기』 현종 3년 9월 12일, “舉動時, 大司諫閔鼎重所啓: ‘凡有傳敎之事, 則承旨必親自分付, 古例然也。今此榻前傳敎之事, 當該承旨必使宣傳官傳說, 非徒不爲詳悉, 其在事體, 極爲未安, 請命推考。’ 上曰: ‘依啓。’”

37) 『銀臺便攷』 「通攷」 〈通行事例〉, “甲辰三月二十七日, ‘各司聽傳敎時, 郎廳親書姓名, 不得以下吏替行。’ 事, 下敎。 … ○ 癸卯五月二十五日, 傳曰: ‘此後, 雖夜, 不敢不着冠服而聽傳敎、受標信, 仍爲載錄於『政院故事』。’”; 『銀臺條例』 「故事」, “雖昏夜, 不敢不着冠服而聽傳敎、受標信。’ 事, 下敎。 ○ ‘各司聽傳敎時, 郎廳親書姓名, 不得以下吏替行。’ 事, 下敎。”

38) 『六典條例』 「刑典」 〈刑曹〉 總例, “聽傳敎, 晝, 則曹司佐郎進去, 夜, 則入直郎官進去, 郎官入直時, 申時受牌, 出直時, 辰時納牌。【牌, 卽四天通符。】 ○ 承傳, 各房輪回舉行。 ○ 各道狀啓及來關公事, 各所掌房舉行, 啓下承傳及咀呪、殺獄、強盜獄事, 九房輪回舉行。 ○ 承傳及咀呪, 雖以從房次舉行, 事係前房, 則勿論房次, 移送前房, 查實承傳, 獨堂不得舉行。【查實草記與啓目, 不陳意見, 且請上裁, 政院不爲捧入。】”

39)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上敎有某營大將兼察之命, 則書出榻敎後, 【某營大將某營大將兼察事, 榻前下敎。】 又奏請牌招。【奏曰: ‘某營大將某營大將兼察事, 命下矣。兼察某營大將某, 卽爲牌招聽傳敎, 何如?’ 榻敎, 則以‘兼察某營大將某, 牌招聽傳敎事, 榻前定奪。’ 書出。 批答, 若有從事官發牌之命, 則以‘兼察某營大將從事官, 發牌聽傳敎事, 榻前下敎。’ 書出。 捕將同。】”; 『銀臺條例』 「兵攷」 〈將臣〉, “兼察有命, 牌招聽傳敎【都提調, 則命招與從事官發牌, 稟旨。】, 代領有命, 亦爲牌招【中軍代領, 只從事官發牌聽傳敎, 領軍時, 標信祇受。】。”;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請牌, “將臣代領事有命, 則牌招聽傳敎。【中軍代領, 無牌招, 從事官聽傳敎。】”

를 행하였으나, 승지는 答拜를 하지 않았다.⁴⁰⁾

Ⅲ. 입시기사와 榻前下教

榻前下教는 御前에서 내린 下教를 가리켰다. 下教의 원래 의미는 ‘教를 내리다.’였다. 국왕의 말과 명령을 나타내는 ‘教’를 내린다는 것이 下教의 본래 의미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삼국시대의 사료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⁴¹⁾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下教도 ‘教를 내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켰는데, ‘教’의 의미가 국왕의 말인지 문서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⁴²⁾

조선후기에는 下教가 주로 국왕이 신하에게 구두로 내린 말이나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왕이 신하에게 구두로 내린 말이나 명령의 의미로 쓰인 下教는 국왕이 신하를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내리는 경우와 신하가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이 承傳色이나 司謁을 시켜 승정원에 전달하게 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정조는 이 두 가지 하교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전교하였다.

“…筵席에 나아온 신하들이 내 앞에서 직접 귀로 듣고서 물러나 거행하는 것을 下教라고 한다. 또 承傳色이 口傳下教를 받들고서 나가면 여섯 명의 承旨가 廳坐하여 글로 옮겨 적고 ‘승전색을 통한 구전하교[以承傳色口傳下教]’라고 써서 朝報에 반포하는데, 그 체제도 傳教와 똑같다.”⁴³⁾

①은 정조가 下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정조의 말에 의하면, 下教는 입시한 신하들이 국왕

40) 『銀臺便攷』 「通攷」 〈院規〉, “非先生從二品以〈上一〉下, 或呈辭或啓辭或密符受納或聽傳教時, 行拜禮於主壁及東、西壁, 則承旨勿爲答拜, 而只於從二品, 小離席前舉手以答而已。”; 『銀臺條例』 「故事」, “正卿以上, 一依先生例待之【正卿外, 非先生, 皆稱姓名呼望。】”, 非先生從二品以下, 或呈辭、或啓辭、或密符受納、或聽傳教時, 行拜禮於主壁及東、西壁, 則承旨無答拜, 而只於從二品, 小離席前舉手。”

41) 『三國史記』 「新羅本紀」 神文王 1년 8월 16일, “下教曰: ‘賞有功者, 往聖之良規, 誅有罪者, 先王之令典。 …’”; 『三國遺事』 「興法」 難陀闢濟, “元十七年二月, 下教崇信佛法求福。”; 『高麗史』 「世家」 成宗 10년 4월(경인), “韓彥恭還自宋, 獻大藏經。 王迎入內殿, 邀僧開讀, 下教赦。”; 『高麗史節要』 忠烈王 18년 1월, “下教曰: ‘忠淸、西海二道民失農業, 不止於飢, 至於穀種, 不曾收畜, 難以播種。 其以監察史金祥、郎將金良粹爲二道勸農使, 貿易穀種均給。’”

42) 『태조실록』 1년 7월 28일(정미), “下教門下府: ‘以洪永通判門下府事, 安宗源領三司事, …’”; 『태종실록』 8년 11월 27일(신미), “乃召司憲府、刑曹、巡禁司掌務, 下教曰: ‘各司見囚及職牒收取人、各道付處人, 每於月朔, 開寫啓聞, 以爲恒式。’”; 『세종실록』 17년 12월 8일(을사), “御札下教曰: ‘讓寧大君來留京都之時, 宗親及有服之親, 相見相會, 不在禁防之例。’ 命下禮曹。”

43) 『日省錄』 정조 23년 5월 12일, “教以: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教。 又或承傳色奉口傳下教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教, 書頒朝紙, 其體段, 亦與傳教同。’”

의 면전에서 직접 받은 명령을 가리키고, 口傳下教는 承傳色이 승정원에 전달한 국왕의 명령을 가리킨다. 신하들이 입시한 상태에서 내린 국왕의 하교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왕이 신하들과 주고받는 말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의 말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가리켰다. 그중 후자를 榻前下教라고 하였다. 즉 국왕의 말 중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승지가 문서로 작성한 것은 榻前下教라 불렀고 신하들이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전색이나 사알을 통해 승정원에 전달한 하교는 口傳下教라고 불렀던 것이다.⁴⁴⁾ 정조 이전에는 구전하교를 구두로 승정원에 전달하였으나 정조는 전달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고 전달한 뒤에는 종이를 회수하였다고 한다.⁴⁵⁾

구전하교가 사료에서 처음 보이는 시기는 효종 1년(1650)으로, 조선후기부터 보이기 시작한다.⁴⁶⁾ 정조 이전에도 구전하교를 사알이나 승전색이 승정원에 전달하면 승정원에서 글로 작성한 사실이 보인다.⁴⁷⁾ 다만 영조 때에는 구전하교를 모두 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글로 작성하기도 하고 글로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다.⁴⁸⁾ ①에서 정조는 승전색이 전달한 구전하교를 승지가 베껴 적어서 朝報에 반포한다고 하였다. 정조의 이 말은 구전하교도 모두 朝報에 반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銀臺條例』에서는 ‘政令을 傳敎라 부르고 政令 중에서도 朝報에 반포할 필요가 없는 것을 口傳下敎라 부른다.’라고 하였다.⁴⁹⁾ 『銀臺條例』의 이 말은 정조의 말과는 달리 구전하교는 朝報에 반포하지 않는 것이 된다. 『銀臺條例』가 나오기 전인 순조 16년(1816)에, 都承旨 朴宗薰이 구전하교 중 문서로 작성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승정원에서 임의로 전교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국왕에게 보고하여 전교를 써서 내려주면 반포하도록 하였다.⁵⁰⁾ 이것은 국왕의 구전하교는 전교로 작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 및 구전하교를

44) 『승정원일기』 인조 1년 7월 4일, “朝講時, ‘全羅監司黃致敬, 遞差.’事, 榻前下教.”;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 11월 1일, “以承傳色口傳下敎曰: ‘當初附托他論, 罪首相, 今此行狀中, 以失對, 罪首相云者, 誠甚未妥, 使之改入.’”; 『승정원일기』 숙종 5년 7월 14일, “以司謁口傳下敎曰: ‘李后平拿鞫傳旨, 速爲捧入.’”;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3일, “丁未七月十三日午時, 上御熙政堂. 召對入侍時, …命恒曰: ‘冬至三使臣, 亦因都政之遷延, 尙未差出, 誠爲悶急矣.’ 上曰: ‘勿待都政, 與嘉禮都監堂郎, 一體差出於後日政, 可也.’ 【榻前下教.】 命恒曰: ‘全羅監司, 當待備局薦望差送, 而卽今秋節已屆, 民事方殷, 不待薦望, 擇差以送, 何如?’ 上曰: ‘予, 亦以此初欲下敎矣. 當此秋務方劇之日, 不可遲待薦望, 後日政, 自銓曹先爲擇差以送, 可也.’ 【榻前下教.】”

45) 『일성록』 정조 5년 9월 11일, “敎曰: ‘…故事, 司謁口傳下敎, 不以文字往傳, 而予, 則爲慮此等之弊, 司謁傳敎, 未嘗以言語傳之. 每於草紙, 書出一通, 使司謁誦傳于承旨, 傳後, 復以其紙還呈差備御覽, 仍置紙筒之軸, 便成一副當規模. 此, 非煩瑣而然也, 意在防奸弊重事體, 而政院, 則猶未知委折, 昨有如許做錯乎!’”

46) 『승정원일기』 효종 1년 4월 21일, “政院啓曰: ‘…’ 勿送事, 以口傳下敎.”

47)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1월 26일, “啓曰: ‘…凡下敎之事, 雖口傳, 而必使該房傳書分付者, 乃是司謁規例, 而今此厚根傳言, 莫重下敎, 而無傳書之事, 殊涉可疑矣.’”;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10월 19일, “明履曰: ‘凡筵中下敎, 出學條還入啓下, 而若夫不入侍時, 司謁之口傳下敎, 自外直書傳敎舉行, 而更無書入啓下之事. 設或有辭意句字之誤傳, 何以知之乎! 臣之愚意, 凡司謁之口傳下敎, 雖已舉行, 注書依學條例書之, 翌日入啓, 一經睿覽後, 踏啓字以下, 似好, 故敢達.’ 上曰: ‘所達極是, 依爲之.’”

48)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6월 13일, “上曰: ‘莫重下敎錯傳, 當該中官, 從重推考. 凡下敎, 有可書者, 有不書者, 而近者, 則司謁傳時, 皆令承旨執筆而書, 亦非古例. 當該司謁, 亦爲推考.’”

49) 『銀臺條例』 「故事」, “政令, 稱傳曰; 政令之不必頒示朝紙者, 稱口傳下敎.”

50)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8월 24일, “宗薰曰: ‘臣待罪本院, 竊有區區愚見之可以稟定者矣. 每當以司謁口傳下敎之時,

는 거시라.’라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속명의록언해』의 주석에서는 탐전하교의 특징으로 3가지를 거론한 것이다. 첫째, 탐전하교는 전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하가 입시한 상태에서 전교를 작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탐전전교를 탐전하교와 구분한 것이다. 둘째, 탐전하교는 승지가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傳下教는 承傳色이나 司諷이 구두 또는 문서로 승정원에 전달하면 승지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탐전하교는 승지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구전하교와 차이가 있었다. 셋째, 탐전하교는 신하들이 입시한 御前에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구전하교는 신하들이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의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승정원에 전달하면 승정원에서 작성하였으나, 탐전하교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작성하였다.

『속명의록언해』에서 말한 탐전하교의 세 가지 특징은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崔錫恒이 아뢰었다.

“首醫가 나갔으므로 許玷더러 診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상이 말하였다.

“허점더러 진맥하게 하라.” 金始煥이 榻前下教를 쓴 뒤에 엎드려 아뢰었다.

“注書를 시켜 나가서 분부하게 합니까?” 주상이 말하였다.

“주서가 나가라.” 假注書 金權이 탐전하교를 가지고 나가서 승정원에 전하였다. 이 뒤의 대화 내용은 下番이 기록한 것을 베껴 쓴 것이다.⁵⁴⁾

③ 주상이 말하였다.

“승지는 앞으로 나오오라. 종이가 있는가? 하교를 쓰라.” 승지 李重述이 즉시 소매에서 종이를 꺼냈다. 주상이 말하였다.

“먼저 규식을 쓰라.” 이중술이 즉시 규식을 썼다. 주상이 말하였다.

“平天冠과 赤烏은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大妃殿께 여쭙었더니, ‘옛 冠과 신履은 服玩·冕服과는 體制가 다르니, 白玉梁·靛纈·五色珠만 사용하고 중복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교하셨다. 이대로 분부하여 거행하라.” 【舉行條件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주상이 말하였다.

“榻前下教로 쓰지 말고 곧장 舉行條件을 내라.” 이중술이 아뢰었다.

“탐전하교로 작성하더라도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것으로 거행조건을 반포하겠습니다.”⁵⁵⁾

④ 柳儼이 아뢰었다.

“신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所懷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시한 자리에서의

54) 『승정원일기』 경종 3년 7월 16일, “錫恒曰: ‘首醫已出, 令許玷診脈, 何如?’ 上曰: ‘令許玷爲之.’ 始煥書榻前下教後, 伏曰: ‘令注書出去分付乎?’ 上曰: ‘注書出去.’ 假注書金權持榻前下教, 出傳于政院. 此後說話, 以下番所記書之.”

5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3일, “上曰: ‘承旨進來. 有紙否? 書下教, 可也.’ 承旨李重述, 卽出袖中紙. 上曰: ‘先書規式.’ 重述卽書之. 上曰: ‘平天冠、赤烏, 舊件仍用事, 仰稟于大妃殿, 則『舊件冠履與服玩、冕服, 體制不同, 則只用白玉(樑→梁)、靛纈、五色珠, 而勿爲疊用.』事, 下教. 以此分付舉行.’ 【出舉行條.】 上曰: ‘勿以榻前下教書之, 直出舉行條, 可也.’ 重述曰: ‘雖以榻前下教書之, 亦有書出舉行條之規, 當以此出舉行條矣.’ ”

대화 내용은 舉行條件으로 작성하여 啓下받기도 하고 榻前下敎로 작성하여 반포하기도 하는데, 그중 榻前下敎는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긴요한 사안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안이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 승지가 밖에서 작성하여 반포합니다. 傳敎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주상께 여쭙지도 않고 작성하여 반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앞으로 榻前下敎로 작성하여 반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시한 자리에서 주상께 여쭙어본 뒤에 작성하고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절대로 榻前下敎를 작성하여 반포하지 못하도록 정식을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상이 말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의례적으로 내리는 榻前下敎가 아니면 어전에서 작성하여 반포하라.”【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金取魯가 아뢰었다.

“승지가 방금 ‘榻前下敎는 사안이 중대한 것인데 자질구레한 사안까지도 榻前下敎를 작성하여 반포하는 것은 몹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라고 아뢰었으니, 그의 말이 옳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매우 엄중한 것인데, 근래에 正草紙의 가격에 대한 사안조차도 榻前下敎를 작성하여 반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이 항상 개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궐에 나아올 때 보니 開陽門 밖에다가 跟隨에 관한 일로, ‘전교하기를, 「궐문의 기둥에 붙이라.」[傳曰貼付門柱]’라고 써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절차로 볼 때 참으로 너무나 온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승정원에 말하여 즉시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개양문의 기둥에 전교를 써서 붙인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해당 관원을 조사해 내서 罷職하라.”⁵⁶⁾

②의 사례를 통해 신하가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구두로 내린 명령을 榻前下敎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榻前下敎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注書가 榻前下敎를 가지고 나가서 승정원에 전해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②의 사례에서는 국왕과 신하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던 주서가 승정원에 榻前下敎를 전달하러 나가는 바람에 대화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자,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下番 翰林이 기록한 것을 보고 베껴서 『승정원일기』에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③의 사례에 의하면, 승지 李重述이 영조의 榻前下敎를 글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筵席에서 내린 국왕의 명은 곧장 거행조건을 낼 수도 있고 榻前下敎로 낼 수도 있으며, 榻前下敎로 낼 경우도 별도로 거행조건을 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榻前下敎를 어전에서 글로 작성하였던 사실은 『승정원일기』의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⁵⁷⁾ 그리고 국왕이 행차하다가 어전에서 하교를 내릴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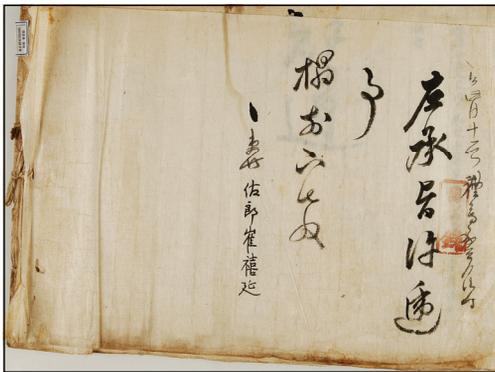
5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2월 7일, “柳儼曰: ‘臣以職掌事, 有所懷敢達。 凡入侍說話, 或以舉條啓下, 或以榻前下敎書出, 而榻前下敎, 則退出後, 勿論緊歇, 承旨自外書出, 傳敎至重, 而不稟書出, 極爲未安。 此後, 則可以榻前下敎書出者, 必於筵中稟達書之, 而罷退後, 切勿書出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而非循例榻敎, 則榻前書出, 可也。’ 【出舉條。】 取魯曰: ‘承旨, 方以「榻前下敎體重, 而或以微瑣事書出, 事甚未安。」之意, 陳達, 其言, 是矣。 君上敎令, 何等嚴重, 而頃者正草紙價, 至以榻敎書出, 臣常慨然。 向者臣詣闕時, 見開陽門外, 以跟隨事, 至書「傳曰貼付門柱。」事體誠極未安, 故言于政院, 卽爲禁去矣。’ 上曰: ‘開陽門柱貼付, 事極駭然。 當該官員, 查出罷職, 可也。’”

57)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17일, “光佐曰: ‘若一月, 則可以治行, 以三月念後, 推擇吉日, 似宜矣。’ 上曰: ‘依爲之。’ 濟書榻前下敎。 上曰: ‘申致雲敎用後, 仍若書狀官事, 書出下敎, 可也。’”;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월 13일, “上曰: ‘賜諡之節, 以申時退行, 可也。’ 命書榻前下敎, ‘賜諡時刻, 以申初一刻退行, 改銘旌, 則以申正二刻退行事, 分付。’”; 『승정원일기』 영조 8년 7월 4일, “廷虎曰: ‘昨日翰林趙明履徑出, 下敎縷縷, 故已爲分付, 而更爲牌招, 何如?’ 上曰: ‘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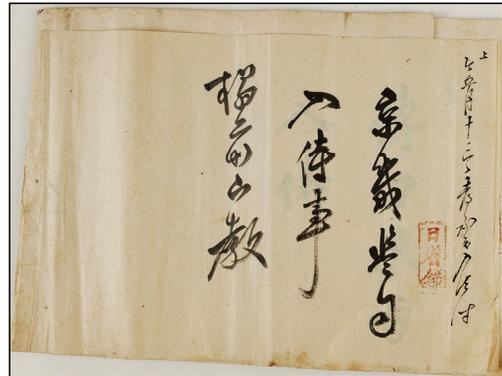
답전하교를 대신하여 駕前下教라고 불렀다.⁵⁸⁾

④는 답전하교를 입시한 자리에서 쓰기도 하고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 승정원에서 쓰기도 하였는데, 유엄의 건의에 따라 영조가 반드시 어전에서 작성하도록 한 사례이다.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 승정원에서 답전하교를 작성하다 보니 승정원이 중요한 사안이나 가벼운 사안이나 따지지 않고 임의로 답전하교를 작성하는 폐단이 생겼으므로 이처럼 정했던 것이다. 다만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답전하교는 승정원에서 작성할 수도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④에서는 답전하교를 바로 전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 적어 반포한다는 점에서 답전하교와 전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답전전교와 답전하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첫째, 답전전교는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하였지만, 답전하교는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답전전교는 국왕이 불러주는 전교를 승지가 ‘傳曰’로 시작하여 그대로 받아 적었으나, 답전하교는 서두에 ‘傳曰’을 적지 않고 ‘[...]’라는 답전하교’의 형식으로 적었다. 둘째, 답전전교는 내용이 길 수도 있었지만, 답전하교는 내용이 짧았다. 답전전교는 국왕의 말을 모두 받아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양하고 길어질 수도 있었으나, 답전하교는 국왕의 말을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하고 짧았다. 다만 둘 다 어전에서 승지가 작성하였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6]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사진 7]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사진 6]과 [사진 7]은 모두 정조가 내린 답전하교이다. [사진 6]은 정조 23년 4월 12일에 정조가 便殿에서 左承旨 李書九를 引見할 때 내린 답전하교로, 『승정원일기』 그날 입시기사에는 ‘又命書榻教曰左承旨許遞.’

欲下教，而未果矣。昨日，有牌招入直之教，而承旨聽瑩矣。’ 廷虎曰：‘然則書榻前下教，即爲牌招呼?’ 上曰：‘依爲之。’【出榻前下教。】”

58) 『승정원일기』 영조 1년 7월 21일, “大駕還宮時，依辛巳年先朝下教，義禁府勿拘主壁事，駕前下教。”; 『승정원일기』 영조 7년 8월 16일, “申時，大駕到高陽行宮門外，降轎時，下教曰：‘南原君，以別雲劍差備來矣。到陵所，雲劍差備，以預差改啓下，南原君，則以地官入侍，可也。’【出駕前下教。】”; 『승정원일기』 정조 4년 9월 4일, “駕到五里程，上命書駕前下教曰：‘高陽、坡州衙舍，依例入處。’…入敦化門，詣降馬所，上命書駕前下教曰：‘各項記過，蕩滌。’又命書駕前下教曰：‘明日朝廷問安，勿爲之。’”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 기은 정조 23년 5월 13일에 重熙堂에서 都承旨 李集斗를 引見할 때 내린 榻前下教로, 『승정원일기』에는 ‘上曰京畿監司入侍【出榻教】’로 기록되어 있다. 榻前下教는 서두 없이 ‘[~]事榻前下教’라고 하여 승지가 국왕의 말을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승정원이 발급한 官府文書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승정원이 有旨를 서두 없이 ‘[~]事有旨’라고 작성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榻前下教와 有旨 모두 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국왕의 말이라는 점에서 국왕문서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겠다.⁵⁹⁾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에는 [사진 6과 [사진 기 이외에도 정조 23년 4월 20일에 작성된 3장의 榻前下教가 더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같은 날 입시기사에는 그 3장의 榻前下教의 서두를 각각 ‘又命書傳教曰’, ‘上命耆書傳教曰’, ‘命耆書傳曰’ 등으로 기록하여 榻前下教의 서두를 적을 때와 똑같이 기록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실제 榻前下教의 작성 형식은 반드시 일치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서 ‘2. 입시기사와 榻前傳教’ ②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지가 입시하여 왕명을 받아 적을 때에는 榻前下教와 榻前傳教를 모두 ‘傳曰’이라 적는 것이 일정한 규례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IV. 입시기사와 榻前定奪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승지가 국왕의 하교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榻前下教였다. 한편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신하들이 건의한 내용을 국왕이 수용하여 결정한 사안도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榻前定奪이라고 하였다. 榻前定奪을 榻前下教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① 신하가 주상에게 아뢴 말 중 먼저 반포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대략적인 내용을 뽑아서 榻前下教를 작성하여 반포한다. 【주상으로부터 나온 하교이면 ‘~하라는 榻前下教’라고 작성하고, 신하들이 요청한 것이면 ‘~하라는 榻前定奪’이라고 작성한다.】 將臣과 捕盜大將을 遞差·罷職하거나 의금부로 잡아다가 심문할 일이 있으면 榻前下教를 작성하여 반포한 뒤에 【‘○○대장 아무개를 체차해 주라는 榻前下教’ 또는 ‘○○대장 아무개를 체차해 주라는 榻前定奪’이라고 작성하여 반포한다.】 승지가 다른 將臣더러 兼察하게 할 것을 청한다. 【승지가 다음과 같이 아뢴다. ‘○○대장 아무개를 체차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군병을 통솔하는 직임은 잠시라도 총괄하여 살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상이 ‘□□대장이 兼察하라.’라는 명을 내리면, 榻前下教를 작성하여 반포한 뒤에 【‘□□대장이 ○○대장을 겸찰하라는 榻前下教’라고 작성하여 반포한다.】 또 겸찰하도록 한 대장을 牌招할 것을 청한다.⁶⁰⁾

59) 최승희도 有旨를 국왕문서로 분류하였다.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95, 73쪽.

①은 『은대편고』에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의 차이 및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을 작성하는 실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은 모두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승지가 작성한다는 점 및 구두로 제기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탐전하교는 국왕이 구두로 내린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었고, 탐전정탈은 국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뒤 문서로 작성한 것이었다.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제기한 사람이 국왕인지 신하인지에 따라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사진 8의 『續明義錄諺解』에서는 탐전정탈을 ‘제신이 탐전에 알린 말을 승지가 써내는 거시라.’라고 하여, 신하들이 어전에서 국왕에게 아뢴 사안을 승지가 글로 써서 내주는 것이 탐전정탈이라고 하였다.

①에서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營門의 將臣을 遞差할 경우에 탐전하교 또는 탐전정탈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시하였다.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어느 營門의 將臣과 捕盜大將을 체차하거나 파직하라고 명하였으면 승지가 탐전하교를 작성해서 내주었고,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체차하거나 파직하였으면 승지가 탐전정탈을 작성해서 내주었다. 승지가 체차 또는 파직된 장신과 포도대장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고 보고하여 국왕이 대신 말을 사람을 정해주면 그 때에도 승지가 탐전하교를 작성하였다. 이때 승지가 특정인에게 대신 맡게 할 것을 청하면 탐전정탈을 작성하지만, 국왕이 정해주었기 때문에 탐전하교를 적었다.

② 또 아뢰었다.

“御營大將 張志恒이 일시적인 병이 다소 나아진 듯한데도 여태 공무를 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捕盜廳의 일을 전혀 거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捕盜大將을 체차해 주라.”【舉行條件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捕盜大將 張志恒을 체차해 주라.’라고 榻前下教를 작성하여 반포하였다.⁶¹⁾

[사진 8]

『續明義錄諺解』

③ 徐命善이 아뢰었다.

“畿士大將은 포도대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나, 이번에는 겸임할 수 없어 구애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左邊捕盜大將 李柱國은 제수된 지 다소 오래되었으니 이제 우선 체차해 주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주상이 말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舉行條件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①】 ‘좌변포도대장 이주국을 이제 우선 체

60) 『銀臺便攷』 「兵房攷」 〈次對〉, “奏語中如有可以先爲頒布之事, 抄出梗槩, 書出榻教【若出自上教, 則書以‘某事, 榻前下教.’ 自下所請, 則書以‘榻前定奪.’】。將臣、捕將, 如有遞罷或拿問, 則書出榻教後【‘某營大將某許遞事, 榻前下教.’ 或定奪。】。承旨奏請兼察【奏曰‘某營大將某許遞事, 命下矣。將兵之任, 不可一刻無摠察之人, 何以爲之乎?’】。上教有‘某營大將兼察.’之命, 則書出榻教後【‘某營大將某營大將兼察事, 榻前下教.’】。又奏請牌招。”

61)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3월 4일, “又啓曰: ‘御營大將張志恒, 一時之恙, 似已差減, 而尙不行公, 至於捕廳事全不舉行云, 宜有申飭矣.’ 上曰: ‘捕將許遞, 可矣.’【出舉條。】 ‘捕盜大將張志恒, 許遞.’事。榻前下教。”

차해 주라.’라고 탐전정탈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② 주상이 말하였다.

“체차해 준 좌변포도대장 이주국을 대신하여 右邊捕盜大將 李昌運이 兼察하라.”【탐전하교를 작성하여 반포하였다.③】 ‘우변포도대장 이창운을 牌招하여 傳教를 듣게 하라.’라고 탐전정탈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④ 주상이 말하였다.

“이창운 더러 검찰하라고 명하였는데도 즉시 패초할 것을 청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승지가 매우 생소해서이다.”⁶²⁾

②는 영조가 포도대장 張志恒을 체차하라고 명하자 승지가 그 명을 탐전하교로 작성한 사례이다. 장지항이 御營大將으로서 포도대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병을 핑계로 어영대장의 일 뿐만 아니라 포도대장의 일까지 거행하지 않는다는 영의정 金相福의 말에 따라 영조가 겸임인 포도대장을 체차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때 김상복이 장지항의 체차를 청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탐전정탈이 아닌 탐전하교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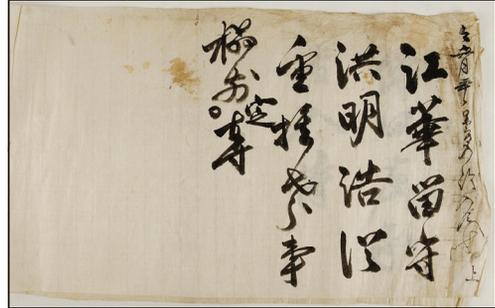
③은 정조가 좌의정 徐命善의 건의를 받아들여 左邊捕盜大將 李柱國을 체차하라고 명하자 승지가 탐전정탈을 작성한 사례이다. 정조가 직접 체차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서명신의 건의를 받고서 체차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②의 탐전정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①의 주석처럼 거행조건으로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이어서 정조가 右邊捕盜大將 李昌運에게 좌변포도대장을 겸임하게 하라고 명하자 승지가 ③의 탐전하교를 작성하였다. 국왕이 이처럼 다른 장신이나 포도대장에게 겸임하라는 명을 내리면 승지는 으레 해당 장신이나 포도대장을 牌招할 것을 청하였고, 국왕이 패초하라는 명을 내리면 그 명을 탐전정탈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말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승지가 이창운의 패초를 즉시 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깨닫거나 지적을 받고서야 이창운의 패초를 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지가 정조의 허락을 받은 뒤 ‘이창운을 패초하라.’라는 ④의 탐전정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②와 ③에서는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을 작성한 사안도 舉行條件을 작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앞의 ‘3. 입시기사와 榻前下教’ ②에서 승지 李重述이 ‘탐전하교로 쓰더라도 거행조건을 써서 내주는 규례가 있습니다.’라고 한 말로 보면 이처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던 이유를 추정해 보면, 탐전하교와 탐전정탈은 국왕의 명령이나 신하의 건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의 핵심만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었지만, 거행조건은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온 뒤에 논의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그 내용과 용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2) 『승정원일기』 정조 3년 6월 1일, “命善曰: ‘蠻士大將, 例兼捕將, 而今番, 則不得兼帶, 事多掣礙云。 左邊捕盜大將李柱國, 除拜稍久, 今姑許遞,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左邊捕盜大將李柱國, 今姑許遞。’ 事, 榻前定奪。 上曰: ‘左邊捕盜大將李柱國許遞代, 右邊捕盜大將李昌運兼察。’ 【出榻教。】 ‘右邊捕盜大將李昌運, 牌招聽傳教。’ 事, 榻前定奪。 上曰: ‘既命兼察, 而不卽請牌, 此, 承旨甚生疎矣。’ ”



[사진 9]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사진 10]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사진 9]와 [사진 10]은 모두 정조 23년에 작성된 답전정탈이다. [사진 9]는 정조 23년 4월 20일에 작성된 것으로, 『승정원일기』 같은 날 입시기사에는 정조가 左議政 李秉模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는 주석만 달려 있고 답전정탈을 작성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진 10]은 정조 23년 5월 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승정원일기』 같은 날 입시기사에는 정조가 判中樞府事 沈煥之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는 주석이 달려 있고, 그 아래에는 답전하교를 작성하였다는 기사가 한 차례 더 보인다. 답전정탈은 서두 없이 ‘~’라는 榻前定奪이라고 하여 승지가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승정원이 발급한 官府文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서의 내용도 국왕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V. 입시기사와 舉行條件

舉行條件은 신하가 입시한 자리에서 군신 사이에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가리켰으며, 舉條 또는 舉行條目이라고도 불렀다. 舉行條件은 답전하교 및 답전정탈과는 여러 가지로 달랐다. 거행조건도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나눈 군신 사이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답전하교 및 답전정탈과 같았으나, 입시한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지 않고 물러나서 작성하였다는 점, 승지가 작성하지 않고 注書가 작성하였다는 점, 군신이 논의한 사안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등이 달랐다.

① 주상이 말하였다.

“注書는 草冊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오라.” 吳彥儒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주상이 말하였다.

“致祭에 관한 나의 下敎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오언유가 초책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외워서 아뢰었다. 주상이 말하였다.

“舉行條件으로 작성하여 반포할 필요 없이 傳旨로 작성해서 반포하라.” 이어서 구두로 ‘傳曰’이라고 불러주었다. 오언유가 승지李世璣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승지가 써야 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주서가 초책의 끝에다가 기록하라.” 오언유가 아뢰었다.

“전지는 승지가 작성해야 하며, 주서는 전지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傳曰’로 적지 말고 ‘上曰’로 적되, 초책에 적어두었다가 그대로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라.”⁶³⁾

② 주상이 말하였다.

“...대체로 舉條라고 하는 것은 거행할 조항(舉行條件)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는 주서가 기록한 草冊을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즉시 啓下 받았고, 승지가 그중에서 거행해야 할 조항을 뽑아서 朝報에 반포하였다. 그러므로 이른바 舉條라고 해보아야 으레 서너 줄을 넘지 않았다. 거조의 批旨를 받아 적고 나서 읽어 아뢰는 법은 先王 병술년(1766, 영조 42)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史官이 주상의 하교를 자세히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받아적은 뒤 읽어 아뢰게 하였던 것인데, 마침내 규례가 되었다. 근래에는 거조가 하나의 거대한 문서가 되어버렸다. 錢穀과 甲兵처럼 상세히 다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야 본래 상세히 다 기록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단의 하위 관료들이 아된 자질구레한 사안까지도 번번이 對策의 서두마냥 쓸데없는 말들까지 죄다 장황하게 열거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써서 바친다. 이것도 조정이 尊嚴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경들이 병술년 이전의 『승정원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잘못된 규례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⁶⁴⁾

①은 注書가 舉行條件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주서는 史官 2명과 함께 입시하여 군신의 대화 내용을 草冊에 기록하였다가 초책의 내용을 옮겨적어 『승정원일기』의 입시기사를 작성하였다. 주서가 입시하여 군신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초책을 注書草冊이라고 하였다. 거행조건은 이 주서초책에 기록된 내

63)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8월 3일, “上曰: ‘注書持草冊前進.’ 彥儒進伏。 上曰: ‘致祭事上敎, 何以錄出乎?’ 彥儒, 以草冊所記者, 一一誦達。 上曰: ‘不必以舉條出之, 以傳旨書出, 可也.’ 仍爲口呼曰 ‘傳曰.’ 彥儒顧謂世璣曰: ‘承旨書之, 宜矣.’ 上曰: ‘注書書于草冊之末, 可也.’ 彥儒曰: ‘傳旨, 承旨當書之, 注書無傳旨之規矣.’ 上曰: ‘然則勿以傳曰書之, 以上曰書之, 書於草冊, 仍出舉條, 可也.’ ”

64)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1월 17일, “上曰: ‘...大抵舉條云者, 卽舉行條件之謂也。 古, 則注書所錄之草冊, 筵退後, 卽爲啓下, 承旨抄出其當爲舉行之條件, 頒示於朝紙, 故所謂舉條, 例不過三數行。 至於舉條批旨承書讀奏之法, 則始自先朝丙戌以後, 蓋緣史官之多未能諦聽上敎, 慮有錯誤, 仍而讀奏, 遂以爲例矣。 近來, 則舉條, 便成一大文字, 如錢穀、甲兵之不得不詳悉者, 固宜詳悉, 而至於微官庶僚細事疏節之陳稟者, 輒敢以剩語瑣說, 有若對策之虛頭, 張皇論列, 無難書納。 此, 亦朝廷不尊嚴之一端。 卿等試考丙戌以前日記, 則必知謬例之如許矣.’ ”

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다. ①에서는 傳旨를 작성하는 책임 및 권한이 승지에게 있고 주서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주서가 군신의 대화 내용을 주서초책에 기록하였다가 거행조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傳旨는 答前前교를 가리킨다.

②는 정조가 거행조건에 대해 밝힌 견해로, 요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이다. 첫째, 거행조건 작성 절차로 말하면, 주서가 군신의 대화 내용을 초책에 적어두었다가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 주서초책을 계하 받고 나면, 승지가 거행조건을 뽑아서 주서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朝報에 반포하였다. 둘째, 영조 42년 이후로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주서가 거행조건 批答을 작성한 뒤 읽어 아뢰기 시작하였다. 거행조건 批答이란 거행조건 중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말을 가리켰다. 셋째, 거행조건 批答은 그전에는 서너 줄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으나, 당시에는 批答이 많아졌다. 그전에는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거행조건을 작성하였으나, 당시에는 대화 내용을 모두 적다 보니 거행조건이 길어졌던 것이다.

거행조건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주서의 책임이었지만, 어떤 사안을 어디까지 작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승지의 책임이었다.⁶⁵⁾ 그렇기 때문에 거행조건 중 주서가 누락시킨 내용이 있으면 승지가 추가하도록 하였고, 주서가 승지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거행조건을 작성하면 推考하기도 하였다.⁶⁶⁾ 주서가 정서한 거행조건은 승지가 入啓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⁶⁷⁾ 국왕으로부터 계하받은 거행조건은 兩司의 奇別書吏가 먼저 베껴 전달하였고, 이어서 각 관사의 서리들도 베껴서 각각 전달하였다. 인조 때의 기사에 의하면 처음부터 朝報에 거행조건을 냈던 것이 아니라 각 관사에서 거행조건을 베껴가다 보니 자연히 조보에 반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효종 때의 기사에 의하면 주서초책과 거행조건의 초본은 주서가 상자에 보관하였다고 한다.⁶⁹⁾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반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조가 즉위한 초기에도 논란이 있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5일 입시기사에는 영조와 신하들이 거행조건을 작성하는 방식 및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반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李光佐와 沈檀 등 연로한 신하들은 옛날 규정을 들어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반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5) 김병구, 「조선 후기 舉行條件의 고문서학적 考察」, 173, 180쪽.

66)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0월 20일, “申得淵啓曰: ‘接待所設立一事, 最是速爲舉行者, 故昨日舉行條件抄出時, 不在於抄錄之中, 臣別爲檢飭, 使之速爲察行矣。至今不爲抄出, 分付, 稽緩特甚, 當該注書, 請推考。’ 傳曰: ‘允。’”; 『승정원일기』 효종 4년 6월 15일, “政院啓曰: ‘凡舉行條件抄出時, 注書起草, 承旨看過, 必須詳審無誤, 然後入啓, 例也。昨日臺諫啓辭, 抄出舉行條件之後, 注書不稟堂上, 任自刪去, 極爲可駭。請當該注書推考, 以重臺啓, 以存體面。’ 傳曰: ‘允。’”

67) 『승정원일기』 현종 1년 6월 25일, “司諫郭之欽、正言安縝啓曰: ‘江原道柴場革罷之事, 臣等論之, 久矣, 每以不允爲答, 至以舉行條件誤抄爲疑, 恐有乖於大聖人出言如綸之美也。所謂舉行條件, 左、右史書之, 退與入侍承旨同議抄啓, 又經睿覽踏啓焉, 然後乃爲行會, 例也。’”

68)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7월 22일, “政院啓曰: ‘傳曰『凡引見時問答, 例不出朝報, 而今何以出於朝報? 且句管廳停罷事, 似是金尙容所啓, 而何以領相所啓云耶? 問啓。』事, 傳教矣。引見時問答, 有舉行之事, 則抄出爲舉行條件, 分付於各司謄書, 故不得不出於朝報。且句管廳停罷事, 金尙容先發之, 而領相及諸重臣皆言之, 故注書抄出時, 莫適爲某某所啓, 歸重於領相而書之云矣。’ 傳曰: ‘今後詳察爲之。當該注書遞差。’”

69) 『승정원일기』 효종 3년 10월 6일, “後高曰: ‘注書有橫, 入侍罷出之後, 卽抄舉行條件上達, 然後草冊與抄草, 並爲入置於橫中, 故人無見之者也。’ 上曰: ‘然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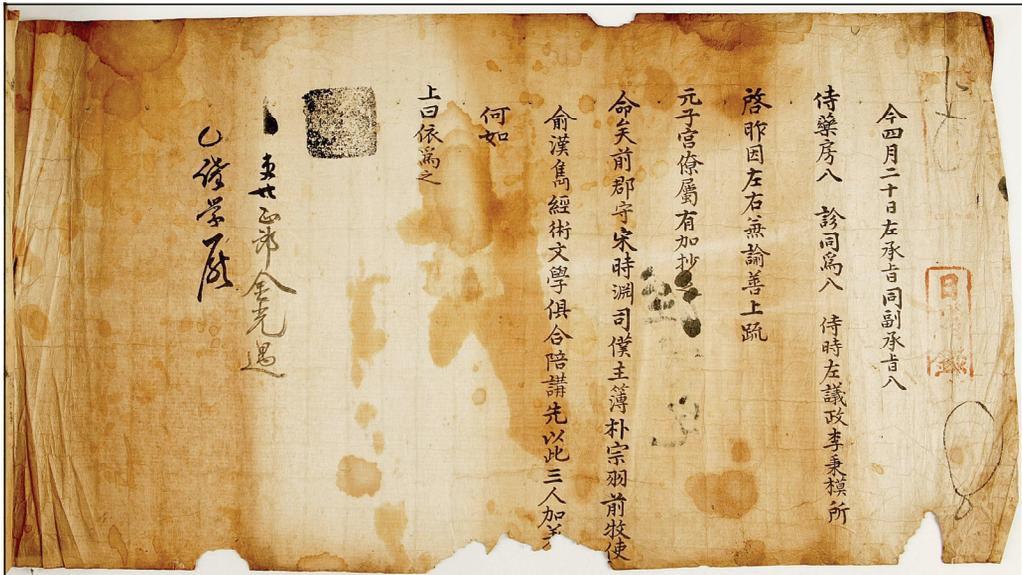
옛날에는 거행조건을 입시한 자리가 과하고 나서 그날 안으로 모두 써서 내주었고 이를 모두 조보에 반포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거행조건이 간략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둘째, 金東弼과 沈壽賢 등 젊은 신하들은 당시의 관례를 들어 필요한 사안만 조보에 반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거행조건 하나가 장문이어서 그날 안으로 써서 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반포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셋째, 주서가 거행조건을 작성할 때면 해당 사안을 논의했던 신하들에게 簡通을 보내 물어본 뒤에 작성하였다. 이는 입시한 자리에서 논의했던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거행조건을 장문으로 작성하게 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넷째, 거행조건 중 조보에 낼 사안은 승지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었다. 金東弼은 이것을 근거로 거행조건을 모두 朝報에 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낸다면 이처럼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金東弼의 말에 의하면 조보에 반포할 거행조건을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방에 통지해야 할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조정의 신하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었다. 다섯째, 최종 결론은 입시한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은 『승정원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행조건은 요점만 뽑아서 간략하게 작성하며,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낼지 여부는 승지가 헤아려서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행조건은 3일 안으로 작성하여 시한을 지키도록 하였다.

③ 또 傳教를 쓰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래 이른바 擧條라는 것도 형식적인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故事에 의하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아뢴 말 중 朝報에 낼 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베껴서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擧行條件이라는 것이다. 記注官의 재능이 점차 예전과 같지 않게 되자 注書草冊을 啓下받는 규칙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뒤에는 당사자에게 簡通을 적어서 보내 字句를 고치게 하였다. 근래에는 이른바 簡通이라는 것이 ‘아무 사안은 어떤 사안인가?’라고 서너 글자를 적어서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간통에 대한 답변이 수식하고 운문한 한 편의 문서가 되어 啓辭와 上疏가 아니면서도 상소와 기사처럼 되었으니, 옛 규례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이 이보다 더 마구 덧붙인 일이 없었다. 오늘 輪對로 말을 하더라도 해당 관사의 하위 관리의 所懷로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내준 것들도 모두 그러한 폐습을 본받았다. 이것도 기강과 관계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옛 제도를 거듭 복구하여 크고 작은 朝會 및 입시하였을 때 신하들이 아뢴 말 중 거조를 내야 할 것은 모두 대화 내용을 작성하는 예에 따라서 거행해야 할 사안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작성하여 들이고 과장하고 수식하는 버릇을 일절 엄중히 금하라.”⁷⁰⁾

70)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6월 11일, “又命書傳教曰: ‘近來所謂擧條, 亦屬浮文中一事。 故事, 凡諸臣筵奏之可以出朝報者, 承旨抄出, 謄頒朝紙, 此, 所謂擧行條件也。 記注之才, 漸不如古, 而草冊啓下之式, 出焉, 又其後, 書送簡通於當者, 使改字句矣。 近來, 則所謂簡通, 不過是某事何事? 三數字之錄送。 如是也, 故其所答通, 便爲一篇文字點綴磨琢, 非啓疏而似疏啓, 不但有違古例, 冗語剩話, 屑越莫甚。 雖以今日輪對言之, 該司微官所懷之出擧行條件者, 皆不得不效之。 此, 亦紀綱所關, 自今申復舊制, 大小朝會及登筵時筵臣奏語之當出擧條者, 只以擧行之大略, 一依筵說例書入, 鋪張綴文之習, 一切嚴禁。’”

③은 정조가 거행조건의 작성에 대해 지시한 사례이다. 정조는 거조 또는 거행조건을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아뢰는 말 중 朝報에 낼 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베껴서 반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말은 거행조건과 조보의 관계가 밀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군신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신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영조와 신하들이 거행조건을 모두 조보에 내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사례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③을 보면 거행조건은 조보에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여러 사안의 거행조건을 한 장의 종이에 적고 그중 조보에 낼 사안은 ‘出朝報’라고 새겨진 인장을 찍도록 하여 거행조건 중 조보에 낼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하게 하였다.⁷¹⁾ 그리고 정조는 주서가 거행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簡通을 보내 답변을 받다 보니 답변한 내용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수식하지 말고 요점만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사진 11]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傳敎軸

[사진 11]은 정조 23년에 작성한 거행조건으로, [사진 9]의 탐전정탈과 동일한 사안이다. 즉 [사진 11]은 정조 23년 4월 20일에 작성된 것으로, 『승정원일기』 같은 날 입시기사에는 정조가 左議政 李秉模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하고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거행조건은 국왕과 신하가 논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注書가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승정원이 발급한 官府文書라고 할 수 있다.⁷²⁾ 거행조건을 官府文書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거행조건은 국왕의 말만 기록된 것이

71) 『政院故事』 「刑攷」 〈臺諫〉, “臺啓, 勿以各張書之, 更端處, 以「又所啓。」書之。若有兩司新啓, 則前一張, 雖新啓累度, 只以府新啓、院新啓, 各一張爲之。其他諸臣舉條, 一人所奏雖累件, 皆以一張書之, 有出朝報者, 只於出朝報條, 印給出朝報。」事, 下教。【甲寅正月初十日。】”

72) 이근호는 거행조건을 왕명문서라고 하였고, 김병구는 ‘거행조건은 중앙관서인 승정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반포하는공

아니라 신하의 말도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대체로 거행조건은 신하가 건의한 내용과 국왕이 결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신하의 말까지 국왕문서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문서의 발급자가 국왕이 아니라 승정원이라는 점이다. 문서의 발급자가 국왕이 아니라는 점은 거행조건에 국왕의 말을 ‘上曰’로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上曰’은 『승정원일기』의 입시기사에 국왕의 말을 기록할 때 서두에 기록하는 것이다. 승정원에서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면서 국왕의 말을 타자화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 이후 국왕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일성록』에는 국왕의 말을 ‘予曰’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국왕의 啓字判付를 받았다는 점이다. 啓字判付는 臣民의 上達文書에 국왕이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관부를 가리킨다.⁷³⁾ 거행조건도 승정원이 入啓하여 국왕의 관부를 받았다는 점에서 승정원의 상달문서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君臣의 말과 글 및 동정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중 국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은 입시한 注書가 草冊에 기록하였다가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었다. 국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 중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국왕이 지시한 사안인지 또는 신하와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인지에 따라 榻前傳教, 榻前下教, 榻前定奪, 舉行條件 4가지의 문서로 나뉘었다.

榻前傳教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전교를 승지가 그대로 받아적어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전교이다. 傳教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承旨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이 司諫이나 承傳色을 통해 승정원에 문서로 전달하여 승지가 베껴 적는 전교이고, 또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국왕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어 작성한 전교이다. 전자를 備忘記라고 하였고, 후자를 榻前傳教라고 하였다.

榻前下教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지시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하교이다. 下教도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이 承傳色이나 司諫을 통해 승정원에 구두나 문서로 전달하여 승지가 받아적은 하교이고, 또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국왕이 지시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작성한 하교이다. 전자를 口傳下教라고 하였고, 후자를 榻前下教라고 하였다.

榻前定奪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신하의 건의에 따라 국왕이 결정한 사안을 승지가 요약하여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榻前定奪은 국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 것

문서’라고 정의하였다. 이근호, 「조선 후기 舉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79쪽; 김병구, 「조선 후기 筵席에서의 왕명 시행 체제 연구 : 舉行條件을 중심으로」, 3쪽.

73) 이강욱, 「조선 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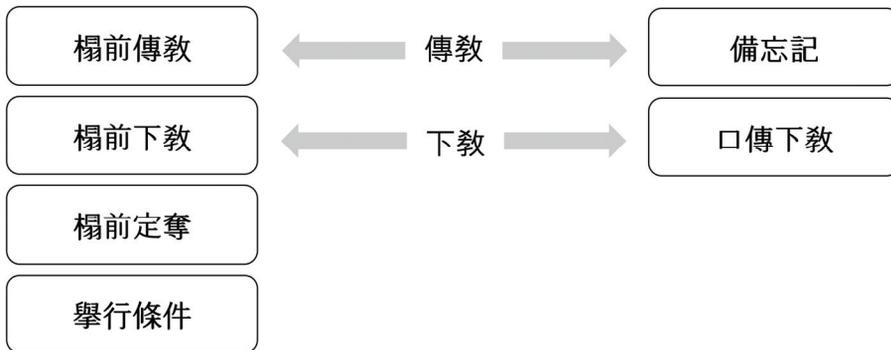
이지만, 탐전정탈은 신하의 건의에 따라 국왕이 수용하여 결정한 사안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국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라는 탐전하교'라고 적었고, 국왕이 신하의 건의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면 「~」라는 탐전정탈'이라고 적었다.

舉行條件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과 신하가 나눈 대화 내용 중 지방에 알려야 할 사안과 조정 관원이 알아야 할 사안 등을 주서가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친 문서이다. 탐전정탈은 승지가 요점만 간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지만, 거행조건은 군신의 대화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직접 인용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注書가 입시한 자리에서 물러나와 거행조건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안을 논의했던 당사자에게 簡通을 보내 확인한 뒤 작성하였다. 거행조건은 대체로 朝報에 반포하였지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신하들이 입시하여 국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한 경우는 네 가지가 있었다. 이들 네 가지 문서의 공통점은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나온 국왕의 말이나 군신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점은 국왕의 일방적인 명에 따라 작성한 것인지 국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뒤 작성한 것인지 등의 차이가 있었고, 작성 절차 및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상 4가지의 문서 및 備忘記와 口傳下教가 생성되는 과정을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와 입시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入侍하였을 때의 발급 문서

入侍하지 않았을 때의 발급 문서



[그림 1] 승지가 入侍하였을 때 및 入侍하지 않았을 때의 발급 문서

이상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신하들이 입시하여 국왕과 신하가 대화한 내용이 어떻게 문서화되었는지를 밝혔다. 군신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한 것도 사안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제시하여 문서 사이의 형식 및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왕의 말과 글을 의미하는 ‘教’를 下教와 傳教로 분류하고 각각 문서화하는 과정 및 절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일부 국왕문서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하교와 전교의 의미 및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이처럼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

다. 셋째, 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왕명은 구두나 문서로 각 관사와 신하에게 전달되었는데, 승정원의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와 입시하지 않았을 때에 따라 왕명을 어떻게 출납하였는지를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로 승정원에서의 왕명 출납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문과 지방아문으로의 왕명 전달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투고일 : 2020년 07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5일

참고문헌

1. 자료

- 崔恒 등, 『經國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金在魯 등, 『續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金致仁 등, 『大典通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趙斗淳 등, 『大典會通』,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具允明, 『典律通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承政院, 『銀臺便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承政院, 『銀臺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趙斗淳 등, 『六典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承政院, 『政院故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陶宗儀, 『說郛』,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李昉 등, 『太平御覽』,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蔡 沈, 『書經集傳』, 학민문화사, 1990.
 柳本藝, 『日省錄凡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논저

- 김경숙, 「消息의 의미와 文書名」, 『고문서연구』 25집, 한국고문서학회, 2004.
 김병구, 「조선후기 筵席에서의 왕명 시행 체제 연구 : 舉行條件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김병구, 「조선후기 舉行條件의 고문서학적 考察」,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9.
 명경일, 「정조대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988.
 이강욱, 「조선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이근호, 「조선시대 국왕의 備忘記 연구」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이근호, 「조선 후기 舉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규장각』 제49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이근호, 「조선후기 口傳下敎의 下達 體系와 개편」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95.
 최재복, 「『承政院日記』 對話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3. 전자자료

『朝鮮王朝實錄』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日省錄』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三國史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三國遺事』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高麗史』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高麗史節要』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傳教軸』 :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Abstract

The Documentation of the King's Discussion with the Subjects in the Records of *Sŭngjŏngwŏnilgi*

Lee, Kang-Wook*

Sŭngjŏngwŏnilgi is a chronicle of the records of words, writings, and conducts of the king and the subjects during the Chosŏn period, compiled by *Sŭngjŏngwŏn* (The Royal Secretariat). As for the dialogues between the king and the subject, the *Chusŏ* (注書) who attended that meeting used to take notes of them and later transcribed them in the *Sŭngjŏngwŏnilgi*. The dialogues that need to be documented and made public were produced as documents. Such documents were sorted by four categories depending on different processes of the decision making. Such four categories were as following: *T'apchŏnjŏn'gyo* (榻前傳教), *T'apchŏnhagyo* (榻前下教), *T'apchŏnjŏngt'al* (榻前定奪), and *Kŏhaengjogŏn* (舉行條件).

T'apchŏnjŏn'gyo (榻前傳教) is the document that recorded the direct order (*jŏn'gyo*) from the king by *Sŭngji* (承旨), when the king made the order with his subjects attended. There were two kinds of *jŏn'gyo* (傳教). The first *jŏn'gyo* was the record reproduced by *Sŭngji* when the one was absent and thereby the king transmit it to *Sŭngjŏngwŏn* through Saal (司謁) or *Sŭngjŏnsaek* (承傳色) in the form of a document. The other was the record directly produced by *Sŭngji* by taking down the king's statements when *Sŭngji* was present with the king. The former was called *Bimanggi* (備忘記), and the latter was called *T'apchŏnjŏn'gyo*.

T'apchŏnhagyo (榻前下教) is the document of king's order (*hagyo*) that *Sŭngji* summarized the king's statement in the form of an indirect quote, when the subjects were present with the king. There were two kinds of *hagyo*. The first was the record reproduced by *Sŭngji* when the one was absent and thereby the king transmit it to *Sŭngjŏngwŏn* through Saal or *Sŭngjŏnsaek* as a form of a document or verbal notice. The other was the document directly produced by *Sŭngji* by summarizing the king's instruction when *Sŭngji* was present with the king. The former was called *Kujŏnhagyo* (口傳下教), and the latter was called *T'apchŏnhagyo*.

* Advisory Committee for Historical Source Translation, Institute of the Eundae Classic Literature

T'apchǒnjǒngt'al (榻前定奪) is the document produced when the king made a decision by following his subject's suggestion. The *Sǔngji* wrote the document by summarizing the king's decision in the form of an indirect quote. On the contrary, *T'apchǒnhagyo* is the document that directly took down the king's unilateral order. As such, *T'apchǒnjǒngt'al* differs from *T'apchǒnhagyo* in that it was a product of the king's acceptance of the subject's suggestion. Therefore, *Sǔngji* used two different expressions (*T'apchǒnjǒngt'al*, *T'apchǒnhagyo*) by distinguishing those two different contexts behind the king's decisions, even when both of the decisions were dealing with the same issue.

Kǒhaengjogǒn (舉行條件) is the document produced when there were issues that regional officials and court officials should be informed of during the discussion between the king and the subjects. It was produced by *Chusǒ* and went through the process of the king's authorization. While *T'apchǒnjǒngt'al* was written with an indirect quote of the summary of the king's decisions, *Kǒhaengjogǒn* differed from *T'apchǒnjǒngt'al* in that it directly quotes the dialogue between the king and the subjects relatively in detail. Also, when *Chusǒ* leaves his seat and write the *Kǒhaengjogǒn*, he asked to confirm the words of those who discussed the issue by sending a letter to them. *Kǒhaengjogǒn* used to be published and proclaimed in the official gazette (朝報), but not all of them.

Key words : *Sǔngjǒngwǒnigi* (承政院日記), *T'apchǒnjǒn'gyo* (榻前傳教), *T'apchǒnhagyo* (榻前下教), *T'apchǒnjǒngt'al* (榻前定奪), *Kǒhaengjogǒn* (舉行條件), *Bimanggi* (備忘記), *Kujǒnhagyo* (口傳下教)